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변경계획안은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8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 2건 8필지 53,983㎡ 2,000,000천원입니다.

가. 토지 취득 : 2건 8필지 53,983㎡ 2,000,000천원

① 방림 글램핑장 조성 부지 매입(문화관광과)

▷ 방림면 방림리 1618번지의 5필지 41,644㎡ 1,383,000천원

②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 부지 매입(시설관리과)

▷ 방림면 방림리 736-3번지의 1필지 12,339㎡ 617,000천원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결과

□ 지방의회에 의결의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 또는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은

- 토지취득 2건 8필지 53,983㎡, 2,000,000천원,
-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0건으로 154,165㎡, 14,198,623천원이며
건물은 총 3건으로 2,419.94㎡, 552,312천원이 되겠음.

□ 사업내용을 보면

○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은

- 뇌운계곡을 활용한 특화된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88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균유지집단화 사업으로 1,383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방림면 방림리 1618번지의외 5필지 41,644㎡의 부지를 매입하여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장,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 2018년 토지매입 후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20년 완공할 계획임.

- 사업부지는 방림1리 뇌운계곡 입구 하천변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는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는 하나, 주변에 산과 계곡을 제외한 특별한 연계 관광자원이 없는 지역으로 여름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에 이용객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지매입비 13억8천만원, 사업비 15억원 등 총 28억8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임.

○ 『방림체육공원 확충사업 부지매입』은

- 기존 방림체육공원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다양화와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방림체육공원 옆 방림리 736-3번지 외 1필지 12,339㎡를 매입하여, 2018년 화장실 1동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다목적구장 1면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균유지집단화사업비 617백만원과 1단계 공사추진을 위해 100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
- 향후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수목 등의 사후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호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